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

제출년월일 : '98. 12. 5

제출자 : 서초구청장

1. 개정이유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행정조직운용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별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 운용함으로써 조례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국장·보건소장·담당관·과장·동장의 직급 및 담당관·과장·동장의 사무분장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안 제2조)
- 나. 국장의 사무분장 사항을 규정(안 제2장)
- 다. 구본청,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별로 규정된 조례를 통합 규정
- 라. 다른 조례의 폐지 :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설치조례는 폐지함.
- 마. 다른 조례에 규정된 기구 및 보조기관 명칭 등은 부칙에서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2조 대지 제106호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나. 예산조치 : 불필요
- 다. 합의
 - 행정자치부자제12200-377('98.10.17) 지방행정조직의 "계"제폐지에 따른 조직운영 지침
 - 행정자치부자제12200-379('98.10.19)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모델 표준안
 - 서울특별시지방행정조직운영지침('98.10.21)에 합의
- 라.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2항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 마. 기타 : 행정자치부행정기구설치조례표준모델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구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동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 본 청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을 둔다.

제4조(감사담당관의 설치) 감사사무에 관하여 부구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5조(행정관리국에 두는 과) ①행정관리국에 총무과·문화공보과·민원봉사과 및 여권과를 둔다.

② 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조직에 관한 사항
2. 청사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4. 동행정에 관한 사항
5. 선거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6.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새마을관련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바르게살기 관련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1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2. 공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13. 문화·관광·예술·총무 및 문화재의 총괄에 관한 사항
14.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시설 및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15. 생활체육·건전생활진흥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6.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7. 문서·관인·민원상담 및 민원안내에 관한 사항
18. 각종 민원서류의 접수처리·장표 및 자료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
19. 호적에 관한 사항
20. 제증명의 발급, 진정의 접수처리, FAX민원에 관한 사항
21. 구·동 민원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2. 병사에 관한 사항
23. 건설기계 등록·검사에 관한 사항
24. 여권민원업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 여권발급 신청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6. 여권 제작·교부에 관한 사항
27. 기타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여권에 관한 대행업무에 관한 사항
28. 기타 정내 나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재무과·세무1과 및 세무2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배정 및 교부에 관한 사항
3. 법제·소송 및 통계에 관한 사항
4. 전산에 관한 사항
5.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공사의 도급, 물품의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7. 지출 및 세입·세출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회계검사·공채·직원저축에 관한 사항
9. 구세입의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및 세입보고서 작성 보고
10.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농지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1. 취득세·등록세 및 지역개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2. 법인소유 부동산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3. 세무조사 및 과세표준액의 평가에 관한 사항
14. 세외수입 총괄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 건설기계에 관련된 자동차세·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6. 주민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7. 면허세·사업소세·마권세 및 도축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7조(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① 생활복지국에 청소행정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위생과 및 산업환경과를 둔다.

② 생활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관한 사항
2.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미화원에 관한 사항
4. 공중화장실의 설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7. 분뇨·오수정화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 생활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9. 직업안정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11. 의료보호 및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
12. 부랑인 선도에 관한 사항
13.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14. 장묘관리에 관한 사항
15.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사항
16.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17.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18.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19.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20. 청소년복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21. 소관법인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2. 식품위생업소(제조업소는 제외)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3.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4. 숙박업, 목욕장업, ○·미용업, 유기장업 및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5. 위생업소 위반사항 임시단속에 관한 사항
26. 시장의 지도, 공장등록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7. 중소기업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8. 물가지도, 지도단속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29. 계량업무에 관한 사항
30. 연료판매소허가(신고) 및 지도감독(가스류 제외)에 관한 사항
31.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32. 가스안전관리업무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3. 가스시공업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4. 농·수·축산유통에 관한 사항
35. 동물약품 및 의료용구에 관한 사항
36. 가축 방역 및 수의사, 동물병원에 관한 사항
37. 축산물(보관 운반업, 판매) 허가 및 신고 사항
38. 방문판매에 관한 사항
39. 대기오염·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0. 소음·진동·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41.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2.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3. 자동차 공해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관리국에 두는 과) ① 도시관리국에 도시정비과·민방위재난관리과·지적과·건축과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도시개발·도심재개발에 관한사항
2.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개발제한 구역은 제외)에 관한사항
3.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개선에 관한사항
4. 무허가 건물의 발생방지·위험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사항
5.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6.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7. 전시운영계획·민방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8. 민방위대 설치·조직편성·동원에 관한사항
9.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관한사항
10. 안전 및 사고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사항
11. 지적업무의 기획 및 조정
12. 지적공사 업무지도·감독 및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13. 토지이동, 소유권 변동정리에 관한 사항
14.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사항

15. 토지거래 허가·신고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 토지취득 및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사항
17. 지적전산,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8. 지적공부·건축물대장관리·등본·열람에 관한 사항
19. 공시지가조사 및 지가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20.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21. 토지이용계획 확인에 관한 사항
22. 주택,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심사 및 통계에 관한사항
23. 민영주택사업승인, 건축허가·착공 및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
24. 건축사, 주택건설업자, 임대사업자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5.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26. 공동주택의 관리, 주택개량, 주거환경에 관한사항
27. 위법건물에 관한 사항의 총괄
28. 공원·녹지관리의 총괄
29.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총괄
30. 산림보호에 관한사항
31. 농지관리 및 화훼, 원예산업육성업무 총괄
32. 도시공원조성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사항
33. 공원, 녹지대 조성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사항
34. 공원내 생활체육, 건전생활 관련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제9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토목과·하수과·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를 둔다.

②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지하도·하천·구거 기타 공공용지의 사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사항
2.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사항
4. 환경순찰의 확인 및 가로장애물 제거에 관한사항
5.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수립 및 집행
6. 도로 및 보도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7.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관리에 관한사항
8. 지하도·지하광장·터널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9. 하수행정의 종합조정
10. 하수도·하천 및 유수지의 건설·유지관리에 관한사항
11. 수방대책에 관한 사항
12. 빗물펌프장 유지 관리에 관한사항
13. 하수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14. 지하수 개발 업무 및 수자원 보존에 관한사항
15. 지역교통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16. 교통수요관리 및 소통개선업무 총괄
17.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행
- 18.. 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운수관련 법규위반 행위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 정비업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 주차단속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2.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23.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분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소장) ①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보건소에 두는 과) ①보건소에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및 의약과를 둔다.

②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작성, 평가 및 통계 등에 관한 사항
2. 문서, 보안, 관인관수 회계 및 인사에 관한 사항
3. 진료비 징수 및 진단서 발급업무에 관한 사항
4.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건분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방역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제1·2종 법정전염병 및 지정 전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독업허가 및 소독의무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9. 공동정호(먹는물)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염병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및 계몽에 관한 사항
11.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2.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13.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
14.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의 재활 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6. 노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7. 제3종 법정전염병 및 지정 전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18.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19.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20.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21.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22.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2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및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2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제13조 (보건분소)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36번지 11호에 방배보건분소(이하 "보건분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각 과장은 보건분소의 소속 직원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제4장 하부 행정기관

제14조(동의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동장) 동에 동장을 두며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서초구 보건소	서초구 서초동 1376번지 3호	서초구 전역
서초구 방배보건분소	서초구 방배동 936번지 11호	서초구 전역